2001년 농림사업 시행지침(양돈분야 요약)

농림부는 구랍 15일 2001년도에 시행할 '2001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'를 확정 발표했다.
이에 본지는 양돈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침서 중 양돈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요약했다. - 편집자 주 -

1. 사료 및 기자재 생산기반 확충사업(자율)중 자가배합사료 제조

1)사업량: 127개소(제조시설 4개소, 제조장비 119개소)

2)총사업비:44억5,700만원(융자 44억5,700만원)

3)지원대상자

• 축협조합, 영농조합법인, 협업체, 양축농가

4)지원단가

• 제조시설:430만원 이내

• 제조장비:23백만원(사업계획에 따라 10~40백만원 범위내 신청가능)

5)지원조건

6)지원시설의 종류

• 제조시설:건물(창고포함), 기계 및 부대시설비 지원(부지구입비 제외)

• 제조장비:분쇄기, 배합기, 발효기, 교반기, 급이배관, 원료탱크, 콘베어 원료 계량 및 투입장치 등 자가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(건축비는 제외)

2. 축산분뇨 처리지원시설(자율)

1)사업량:2500개소

2)총사업비:363억6천만원(보조 121억8백만원, 융자 242억5,200만원)

3)지원대상

• 단독시설

-오분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할 축사농가

· 오분법에 의한 구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기지원분을 포함한 개소당 하도액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

-축산분뇨 액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,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회원(단, 축산농가와 축산 분뇨 수거 계약을 체결후 지원)

-축산분뇨처리시설을 1995.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

-4대강(한강, 낙동강, 영산강, 금강)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

• 공동시설 · 톱밥제조시설등

-축산단지, 축산계열화사업체(소 · 돼지 · 닭)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법에 이하여 설립된 지역축협조합(톱밥제조시설은 산림조함 포함). 오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 · 운반영업허가를 받은 약비전문처리 업체(지역 농 · 축협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

· 공동시설은 1995.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기계설비의 보완대상 포함

• 정착촌구조개선

-나환자 정착촌의 법인체(영농조합법인 등)·축산농가 및 한성협동회, 지방자치단체

· 법인체, 한성협동회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시설,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 시설의 각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내에서 지원

· 정착촌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1995.12월마 이전에 설치한 노후기계 설비의 보완대상 포함

4)지원내용

• 단독시설

-퇴비·액비화시설 : 축분발시설(건조식·통풍식·교반식등), 저장액비화시설, 퇴비사, 액비저 장조(경종농가 포함), 건조장

-정화방류시설 : 오분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

-부대 기계·장비 : 소형·이동식 톱밥제조기·파쇄기, 왕겨분쇄기·왕겨팽연화 장비, 액비운 반탱크(압롤박스), 스키드로다, 축분 이송스크류, 고액분리기, 퇴비·액비살포장비(단, 트랙타, 경운기, 축산분뇨 운반·살포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)

5)지원규모

• 축종별 축사㎡단위당 사업비적용기준

-단독시설, 공동시설,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㎡단위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(돼지는 ㎡당 7만4천원)

6)지원 한도

• 단독시설 : 돼지 3억이내, 한우·젖소·닭 2억이내

• 공동시설 : 돼지 15억이내, 한우·젖소 8억이내, 닭 10억이내

• 톱밥제조시설등(왕겨팽연화시설) : 12억이내

7)지원 조건

• 단독시설·공동시설·톱밥제조시설

-지원비율 : 보조 30%, 융자 70%

-융자조건

· 융자기간 : 10년(3년거치 7년균분상환)

· 금리 : 연 4.0%

· 재원 :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(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)

• 정착구조개선 : 보조 70%, 융자 30%

8)부대시설의 단가

• 축산분뇨퇴비 처리장비 : 1천만원이내(스키드로다는 2천만원이내)

• 축산분뇨 운반·살포용차량, 축분퇴비포장기 및 왕겨팽연화장비(공동시설용에 한함) : 30백만원 이내

-축분퇴비유통센타(RPC 포함)의 왕겨팽연화시설·장비 : 1억2천만원 이내

3. 가축개량사업(공공)중 가축개량기반구축

1)사업량 : 110명(돼지인공수정 기술교육 100명, 돼지능력검정원양성 10명)

2)총사업비 : 3,700만원(돼지인공수정 기술교육 2,300만원, 돼지능력검정원양성 1,400만원)

3)지원대상 :한국종축개량협회(종축등록)

농협중앙회(소 자가인공수정기술교육 및 장비보급, 소 수정란이식, 돼지정액생산 및 인공수정기술, 돼지정액생산 및 인공수정기술, 돼지능력검정원양성교육)

4)지원내용

• 가축개량관련 기술 보급 :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교육 및 장비보급, 소수정란이식기술교육, 돼지정액 생산 및 인공 기술교육, 돼지

능력검정원양성교육 등 기타 개량총괄기관에서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5)지원조건 : 축발기금 보조

4. 축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사업(공공)중 축종별 자율사업협의체

1)양돈·양계 자율사업추진협의체에 2001년도에 각각 500억원씩을 Package로 융자 지원하여 시범실시(우유는 낙농진흥회 중심으로 추진중)

6.축산물안전 및 경영안정사업(공공)중 축산물 안정성강화중 가축질병 근절대책

1)사업량

• 소규모농가 예방접종 : 1580천두

• 농장채혈 및 기자재 공급 : 360천두

• 소독약품 공급 : 450천호

• 신고포상금 : 250건

•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: 129개소

2)총 사업비 : 98억5,300만원

3)지원내용

• 소규모농가 예방접종

-접종요원 : 접종 시술비, 차량운영비, 식비

-예방접종기자재(방역복, 주사기 등) 공급

• 농장채혈 및 혈청검사

-방역본부 시군요원의 채혈비 및 기자재 지원

-검사대상 : 구제역, 돼지콜레라, 돼지오제스키병

• 소독약 공급

-구제역 전국 일제소독을 위한 소독약 공급

-돼지콜레라, 닭뉴캣슬병 발생지역에 대한 소독약 공급

• 교육 홍보

-순회 교육, 리후렛, 담화문, 전문지 광고 등을 위한 소요사업비 지원

• 신고포상금

-구제역, 돼지콜레라 발생신고 포상금

-이동제한 위반, 예방접종 미실시 등 방역위반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

• 방역지원본부 운영 및 장비

-사무국·도본부의 인건비 및 운영비

-시군 지부의 운영비 지원

5. 축산물안전 및 경영안정사업(공공)중 가축방역

1)사업량 :853,491천두

2)총사업비 : 232억8,900만원

3)지원내용

• 긴급 방역재료비 : 전염병 발생지역 소독약 및 일제 소독에 소요되는 약품 공급 등

• 예방약품 등 공급 : 예방주사·검진·기생충구제, 진단킷트 등 약품 공급

• 수의사 연수교육 :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 교육 실시비용 지원

• 예방접종 시술비 : 정부 지원예방약의 접종시술비 지원

• 살처분보상 및 도태장려금 : 구제역, 돼지콜레라, 오제스키병 등 11종

•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: 방역보조원, 방역장비 등 지원

• 수의과학검역원의 방역재료비, 진단액 생산, 활동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

4)지원대상

• 시도(구), 가축위생시험소(44개소), 수의과학검역원

5)지원기준 : 국고 70%, 지방비 30% 수준(세부사업별로 지원기준 상이)

• 예방주사,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약품비 : 국비 70% 지방비 30%

• 살처분보상금 등, 수의사교육, 혈청검사 사업 등 : 국비 100%

•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및 장비 지원 : 국비 50%, 지방비 50%

• 예방접종 시술비 : 국비 50~60%, 지방비 40~50%

6. 농업경영 종합자금지원(자율)

1)총사업비 : 2,105억원

2)지원대상자

• 원예특작·축산분야 재배·생산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 사업수행능력 빙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체

• 농기업경영자금, 축산전업경영자금 연계운용에 따른 지원대상(시설자금은 지원하지 않음)

-원예특작·축산분야 유통·가공·저장사업 : 정책자금(지방자체단체 자체 사업 포함)을 지원받은 시설로 사업중인 농업인, 농업법인

3)지원조건

• 지원자금의 종류

-원예특작·축산분야 : 시설·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을 종합 지원

-기타 분야 : 개보수·운영자금만을 지원

• 지원조건

-금리 : 연리 5.0%

-상환조건

· 시설자금 3~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
※축산 및 철골(유리 혹은 경질)온실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
· 개보수자금: 2년 거치 3년 규분상환

· 운영자금 : 2년 이내 상환

-시설자금 : 생산·재배시설, 저장·유통·가공시설 및 증축자금, 토지매입자금,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시설 등

4)지원한도 :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(상한액 없음)

※2천만원에 미달하는 소액 시설설치자금(에너지절감시설 포함)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가능

※토지매입자금은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평당 35,00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러 입증되는 관인계약서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

• 관인계약서상 시가가 인접토지와 가격차이가 클 경우에는 대축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 조정 가능

• 규모한도 : 농지는 300평 이상(시설용 농지는 100평 이상)

7. 농축산경영자금지원(공공)중 축산경영자금 지원

1)사업비 : 6,700억원

2)지원조건 및 자금의 용도

• 융자기간 : 1년이내(필요한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능)

• 금리 : 5.0%

• 자금의 용도 : 사료구입비, 동물약품비, 기존불량시설의 개·보수비 등 가축 사육에 소요되는 운영자금

※신규시설투자, 가축입식 및 토지구입비는 지원제외

단, 재해대책 경영자금의 경우는 가축입식비 지원 가능